

사근제1구역주택재개발(해산)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사근제1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15조의4제8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보조금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.

2015. 1. 8.

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

1. 지급신청 내용

- 가. 신청인: 사근제1구역주택재개발(해산)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란수
- 나. 보조금액: 47,524,110원
- 다. 지급신청금액: 47,524,110원
- 라. 신청일: 2014.12.24.

2. 지급계획

- 가. 승인취소 추진위원회: 사근제1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
- 나. 지급대상: 사근제1구역주택재개발(해산)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란수
- 다. 지급금액: 47,524,110원
- 라. 지급방법: 신청대표자 신청계좌로 계좌이체
- 마. 지급일자: 2015. 2. 2. 예정
- 바. 문의: 성동구청 주택과(☎ 2286-5604)